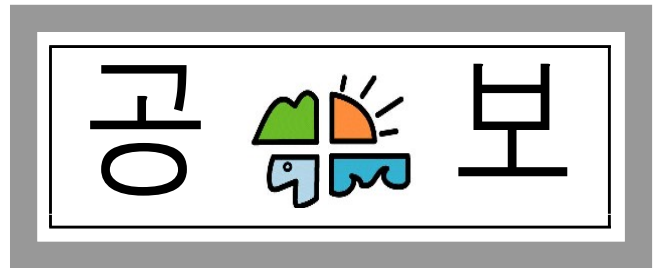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275호 2020년 7월 10일(금)

조 례

- 속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2
-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 6
-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규 칙

- 속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16

공 고

-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18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63호

속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보조금지원 시설·사업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그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해당 경비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이 조례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설·사업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이를 시민(속초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들에게 알리도록 그 시설·공사현장 등의 내외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및 관리는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보조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강원도의 자금인 경우와 해당 보조사업이 국가 또는 강원도의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른다.

제4조(종류 및 기재사항 등) ①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운영표지판에는 해당 보조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시설·사업 등의 명칭
2. 보조사업자의 인적사항. 단,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를 말한다
3. 보조금의 금액 및 지원기관
4.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5.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지원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표지판의 설치에 필요한 보조사업자, 규격·형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설치 및 장소) ① 보조사업자는 시설·사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을 해당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1. 공사표지판 : 공사현장. 이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표기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2. 시설표지판 : 건립한 시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 시설상징물로 갈음할 수 있다.
3. 운영표지판 :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 운영 중인 시설

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로 정해야 한다. 다만, 그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설치시기 및 기간) ①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사업 등을 개관·개시하는 날부터 설치한다.

② 표지판은 해당 시설·사업 등의 운영 또는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설치해 두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에 설치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그 내용연수(耐用年數)를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로 한다.

제7조(설치비용 및 계상) ①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해당 보조금 사용신청서에 계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감독) ① 표지판은 그 보조사업자가 관리하고,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해당 표지판의 관리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② 시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다음 보조사업의 지원심사에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64호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교육 및 농업인단체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3. “농업인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목적으로 기술습득, 정보교환 등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교육)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속초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업인·농업인단체·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대학 운영) ① 대학에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행정담당자를 둔다.

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교학처장은 지도 담당, 행정담당자는 농업인대학 업무담당자가 된다.

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교육운영, 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교학처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교무를 총괄한다.

⑥ 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 교학처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5조(학사 관리) ① 학장은 매년 대학의 입학전형 및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 모집 등 학사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강사의 위촉) ① 시장은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

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

2.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교육경비의 지원) 시장은 전문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 교육에 관한 경비

2. 현장교육에 따른 경비

3. 교재 구입·제작 및 실습재료 등 교육 운영에 드는 경비(단,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받을 수 있음)

제8조(교육의 위탁) 농업인 교육훈련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농업인단체 육성) 시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단체를 과학영농의 선도 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야 한다.

제10조(농업인단체 활성화) 시장은 농업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1. 농업인의 날 행사

2. 수련대회

3. 농업기술 연찬

4. 도·농 교류

5. 중앙·도단위 농업인단체 주관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농업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 농업국가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
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
3. 세계 농업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
4. 농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2765호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위하여”를 “위해”로,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를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검직신고(변경) 서식에 따른다.

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

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등 당사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시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변경)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속초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속초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속초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별지 1호 서식, 별지 2호 서식,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속초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별지 제1호 서식]

연번	1	검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속초시의회의원 검직(변경)신고서						
소속정당			선 거 구 분	지 역 구		
성 명	한 글		비례대표			
	한 자			생년월일		
검 직 내 용	기관·단체명					
	직 위		기간	~		
	수행업무내역					
	분 야	농수산 ☐ , 상공업 ☐ , 건설업 ☐ , 서비스업 ☐ , 교육 ☐ , 전문직 ☐ , 기타 ☐				
	영리성 여부	영리 ☐ , 비영리 ☐				
	보수수령 여부	보수수령 ☐ , 보수 미수령 ☐				
	보수 수령액 (연간)	근로소득				원
		근로소득 이외 소득				원
계					원	
주 소				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속초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검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의회의원 (인) 속초시의회의장 귀하						

속초시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성명				생년월일					
수의 계약체결 제한 관련자	총명								
	본인 관련자명				본인, 직계존·비속명				
	배우자 관련자명			유무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명 -				
연번	관계	성명	생년월일	사업자명 (상호, 법인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장 소재지	지분율	기타
1									
2									
3									
4									
5									
6									
7									
8									
9									
10									

-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
-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속초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용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속초시의회의원

(인)

속초시의회의장 귀하

[별표2]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적용기준
1. 겸직신고 위반	○ 겸직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겸직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법 제36조제2항 위반)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영리거래 금지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 영리거래금지 위반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 -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 ○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허위신고 - 미신고, 허위신고 ○ 계약체결 제한 위반 ○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경고, 공개사과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속초시의회에서 의결된 속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7월 10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471호

속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서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원 소개의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소개의견		

청원 철회 의견서

청원건명			
청원인	주소		
	성명	(인)	생년월일
소개의원	(인)		
청원제출일자		청원철회일자	
철회요구사유			

건축허가(신고)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변경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하는 도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0년 07월 06일

속 초 시 장

1. 공 고 명 : 건축허가에 따른 도로지정
2. 도로위치 : 도로지정 조서 참조
3. 공고기간 : 2020. 07. 10.~ 07. 24.(14일)
4. 도로지정 조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허가(신고)번호 (건축허가일) 도문동 861번지 단독주택 2020-건축과-신축허가-50 (2020.06.30.)	비고
			공부 면적	지정 면적			
속초시 도문동	861	전	625	85	엄현실		건축주: 김희영, 엄현실

5. 공고방법 :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6. 관계도서 : 속초시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7. 문의사항 : 속초시 건축과 건축행정팀(033-639-2769)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NONE



현황도

축척

NONE